

의안번호	제375호
의결연월일	2021. 10. 18.

- 예산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. 9. 29. 홍원표, 김태금, 전용구 의원

나. 회 부 일 자 : 2021. 10. 8.

다. 상 정 일 자 : 2021. 10. 18.

제274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[의원 : 홍 원 표]

가. 제안이유

-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예산군 빈곤 아동이 복지·교육·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(안 제1조, 제2조)
-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(안 제3조, 제4조)
-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(안 제5조)
-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(안 제6조)

- 관계 기관 등への 협조요청에 관한 규정(안 제7조)
-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규정(안 부칙 제2조)
 - 안 제6조에 따라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아동 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빈곤아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동시에 개정토록 함

3. 검토보고 요지 [전문위원 : 박 우 현]

- 본 조례안은 빈곤아동이 복지·교육·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는 시책을 통해 빈곤 아동의 안전과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
-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법령에 위배 되지 않으므로,
-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·답변요지

- 없 음

5. 토 론 요 지

- 없 음

6. 심 사 결 과

-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